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등 입찰시 특정제품 명기 및 요구 금지 협조요청

1. 귀 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1-1-7에 물품 제조·구매 입찰시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거나 입찰 조건 등에서 정한 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앙·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계서·현장설명서·내역서 등에 특정제품을 명시함으로써 독점적 가격결정으로 업체의 공사비 부담이 커지고, 성능이 유사한 타 제품 선택권이 박탈되는 등 계약상대방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고충민원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계약담당자 교육 시 전파 등을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계약제도과장), 행정자치부장관(회계제도과장)

서기관 도시수자원민 전결 2015. 7. 21.
원과장

협조자

시행 도시수자원민원과-5689 (2015. 7. 21.)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국민권익위원회) / <http://www.acrc.go.kr>

전화번호 044-200-7484 팩스번호 044-200-7936 / 99jang@korea.kr / 비공개(6)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규제개혁신문고 등 건의 관련 준수사항 통보

1.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외교부(제21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이행 현황 점검), 국민권익위원회의 건의과제와 관련입니다.

2. 일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고충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규제개혁신문고 등 건의 관련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시·군·구(교육지원청),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준용)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규제개혁신문고 등 건의 관련 준수사항 1부. 끝.

행정자치부



수신자 서울특별시(재무과장), 부산광역시(회계재산담당관), 광주광역시(회계과장), 인천광역시(회계담당관), 광주광역시(회계과장), 대전광역시(회계과장), 울산광역시(회계과장), 경기도지사(회계과장), 강원도지사(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재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회계과장), 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세종특별자치시(총무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부산광역시교육감(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 대구광역시교육감(행정회계과장), 인천광역시교육감(복지재정과장), 광주광역시교육감(재정지원과장), 대전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울산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경기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행정과장), 충청북도교육감(재무과장), 충청남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북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남도교육감(재무과장), 경상북도교육감(재무정보과장), 경상남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재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학교지원과장), 외교부장관(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도시수자원민원과장)

행정사무관 호미영 회계제도과장 전결 2015. 7. 28.
최두선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1368 (2015. 7. 28.) 접수 도시수자원민원과-5984 (2015. 7. 28.)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 http://www.mogaha.go.kr
1315호

전화번호 02-2100-3541 팩스번호 02-2100-3527 / omeong@mogaha.go.kr / 대국민 공개

태극기 게양으로 대한민국 사랑을 보여 주세요

규제개혁신문고 등 건의과제 준수사항 통보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p>1. 건설공사 등 입찰시 특정제품 명기 및 요구 금지</p>	<p><건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중앙·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계서·내역서 등에 특정제품을 명시함으로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적 가격결정으로 업체의 공사비 부담이 커지고, - 성능이 유사한 타 제품 선택권이 박탈되는 등 계약상대방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고충민원 접수 <p><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는 계약담당자가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임</u>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7-나-7)" 	<p>권 의 위 협조요청</p>